

眞正한 丁茶山 研究의 길 (五)

(아울러 茶山論에 나타난 俗學的 見解를 批判함)

天台山人

五, 丁茶山の 土地公有論

茶山은 到處에 土地의 公有를 主張하였다.

1, 「嗟呼라 今之山川은 堯舜三王之山川也오, 今之疆域은 堯舜三王之疆域也라(非田論一).」

2, 「田也者는 天子諸侯之物也라. 天子諸侯之有是田而頒之於農夫也에 猶今之富人有是田而授之於佃父也라(非田論三).」

3, 「古者엔 天子諸侯가 爲田主하고 今也엔 群黎百姓이 爲田主하니 斯其所亂圖也라(井田論三).」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全國의 土地가 少數의 土豪와 權門에 歸한 이때에 安저서 一介 書生으로 全國의 土地를 公有로 하자는 「井田論」(『經世遺表』 第六編, 卷二〇)를 發表하기는 넘우도 唐突하고 無謀한 것 가트면서도 當時의 政刑은 바로 切實히 이것을 要求하였든 것이다.

原則的으로는 公有일 그 土地가 어느새 李朝中葉부터 다시 土地의 私有制度가 確立되어 一朝에 그 所有者群에게서 井田制를 施行하기 爲하여 私有土地를 沒收하기는 特權群의 反感도 問題려니와, 이들의 손에 運用되는 當時의 政勢로 보아도 그것을 企圖할 수는 到底히 어렵든 것이다. 그래서 茶山은 井田論에서 土地公有制의 漸次的 實現을 보고져 다음과 가튼 發議를 하였든 것이다.

一, 中外留庫錢으로 公田買收를 開始할 것--公田 一區는 大略 百□ 卽 四十斗落이니 一斗一貫(十兩)으로 하고, 萬區에 四百萬兩이니 一國의 힘으로 數州 公田의 買收도 困難하지만 兵戶曹, 宣惠□, 五軍門, 內需司, 壯勇營의 留□ 등으로 잘 經理하여 公田을 사라.

二, 中外의 將臣, □臣, □臣, 收臣들의 作□의 什分之二를 存하여 이 私田買收를 돕게 할 것. 四軍門의 大將, 四都留守, 八道監司 等도 그 歲食을 算하

야 公田을 除한 買收의 什分之을 除하고는 모다 여기 쓸 것이다. 平安監司는 歲食 廿四萬兩이니 그 半節은 公用에 쓰고도 九萬六千兩은 私田 買收에 쓸 수 있다. 八道兵馬使水軍使臣收 等도 이에 準하라.

三, 金銀腫穴들은 □官을 보내여 □□를 監하고, 御使를 보내여 奸惡을 살피고 그 收入은 이에 充用케 하라.--江界 銀坡洞의 銀, 遂安 彦眞山の 金, 谷山の 銀, 星州 昌原의 金 等이 그 一例다. 이를 土豪, 無賴에게 맞기면 多福洞 金店에서 洪景來가 일어나는 일이 □出할 것이다.

四, 國中의 田摺을 精密調査해서 이에서 빠진 것이 잇거든 沒收하고, 새로 新起하는 □田, 荒遠田을 編入하고 또 犯罪者, 絶戶者 等の 田을 公田으로 하라.

五, 祿田, 職田, 寺院田, 書院田 等等을 沒收하여 이를 公田으로 編入하라.

六, 民國의 利害를 말하여 納田 自願者가 잇거든 그 田을 錄하라. 朝廷이 大政을 行한다 하면 忠順樂善한 사람은 感憤激烈하여 九石落이 잇스면 一石落, 九□落이 잇스면 一□落을 바칠 자 잇스리라.

七, 設使 私田이라도 그 겨데 設置한 井田法의 規定을 그대로 準用하면, 그 田主는 또 井數에 따라 公田과 同一하게 九一稅를 관에 맞치게 되고, 이리 하면 저절로 公私間의 악착한 區別도 업서지고, 따라서 公田 施設의 全國的 成功도 不遠에 可能하리라는 것이다.